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선발 절차	3
3. 사업 신청	4
4. 사업대상자 선정	6
III.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8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8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2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2

IV.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3
1.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13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18
V.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20
1. 기관별 역할	20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21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24
VI. 기타 행정사항	25
< 부록(별표 · 별지) >	28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실행 포함)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 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농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시설 등) 매각, 사업 포기,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202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I .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추진 방향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2. 관련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	`23	`24		
선정인원(명)	500	252	459	444	‘25.6월말	(선정인원/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보고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억원)

구 분	'81~'22년(누적)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선정인원	11,100	459	444	500
정책자금(융자)	12,298	500	500	600

II. 2025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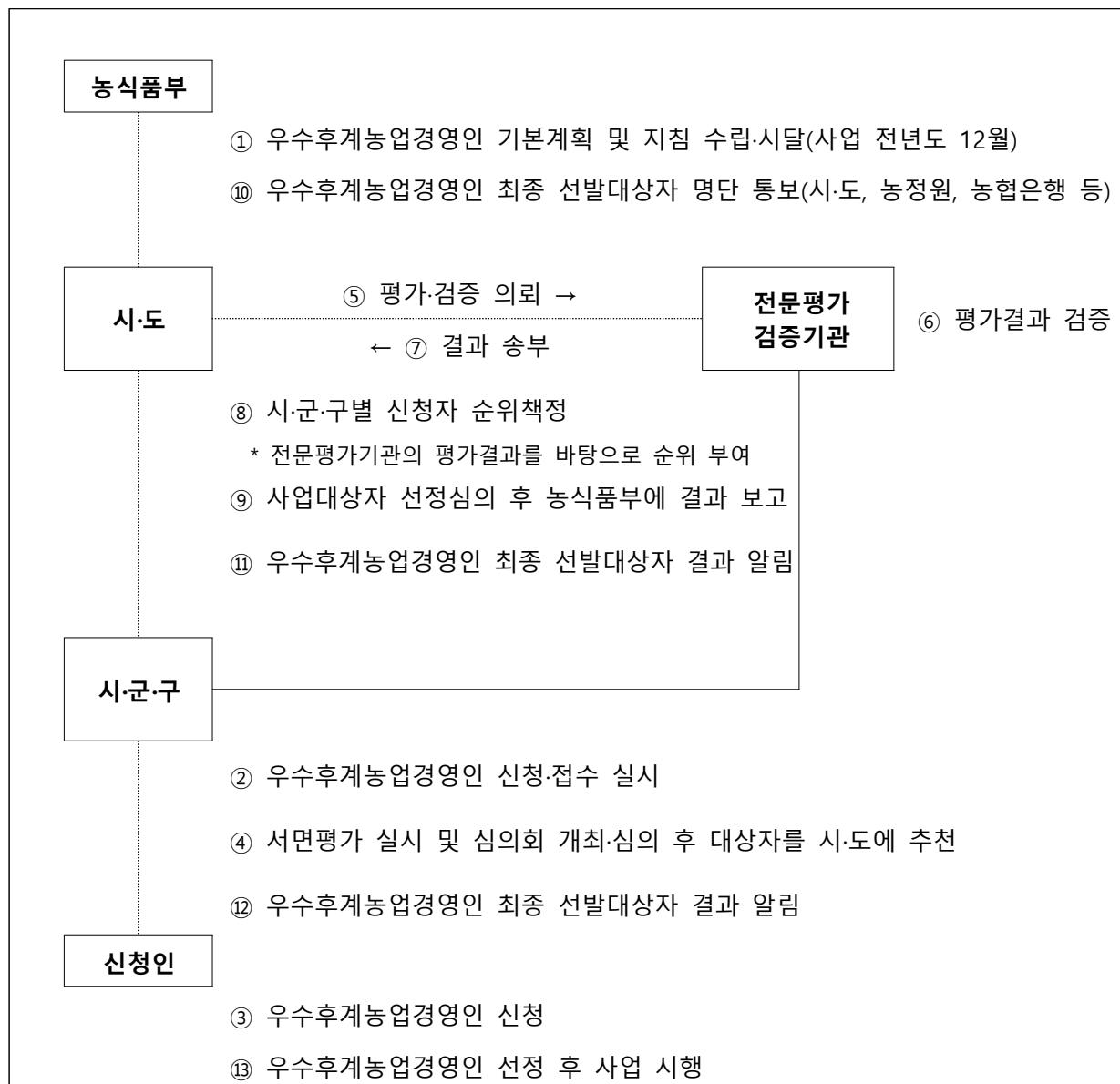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포함)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 선발 절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절차

-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 ('25.3.24~'25.4.16)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23) → ④ 시·도 : 평가검증기관에 평가·검증 의뢰(4.28) → ⑤ 평가검증기관 : 자체 평가결과 검증(4.28~5.12)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5.23) → ⑦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6월~)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



3.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 (특광역시 포함) 및 농정원 등에 시달

* 사업량 배정(500명) : 전국 단위의 점수순위에 따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
하므로 시·도별 인원 배정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전국 단위 경쟁)

시·도(특광역시 포함)

-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신청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
 - * 다만, 경영장부 · 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 기관 선정, 사업참여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

4. 사업대상자 선정

읍·면·동

- 사업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자격요건 및 조건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군·구에 추천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추천자(서류 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와 명단 등을 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자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증빙자료(경영장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별지 제5호)하고, 자체심사([별표 1]의 심사표) 실시
 - * 심사지표는 [별표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를 참고하고,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시·도(특광역시 포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검증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 * 평가·검증 의뢰 시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전문평가검증기관

- 전문평가검증기관은 평가검증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평가검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 후 평가검증 추진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검증 결과를 해당 시·도에 제출
 - * 필요시 시·도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검증 결과 설명 가능
 -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관련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시·도(특광역시 포함)

- 전문평가검증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III.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원규모 및 기준,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교육 및 추가 지원 등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규모 : 600억 원(연)

○ 지원인원 : 전국 단위 500명

○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 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기타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액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축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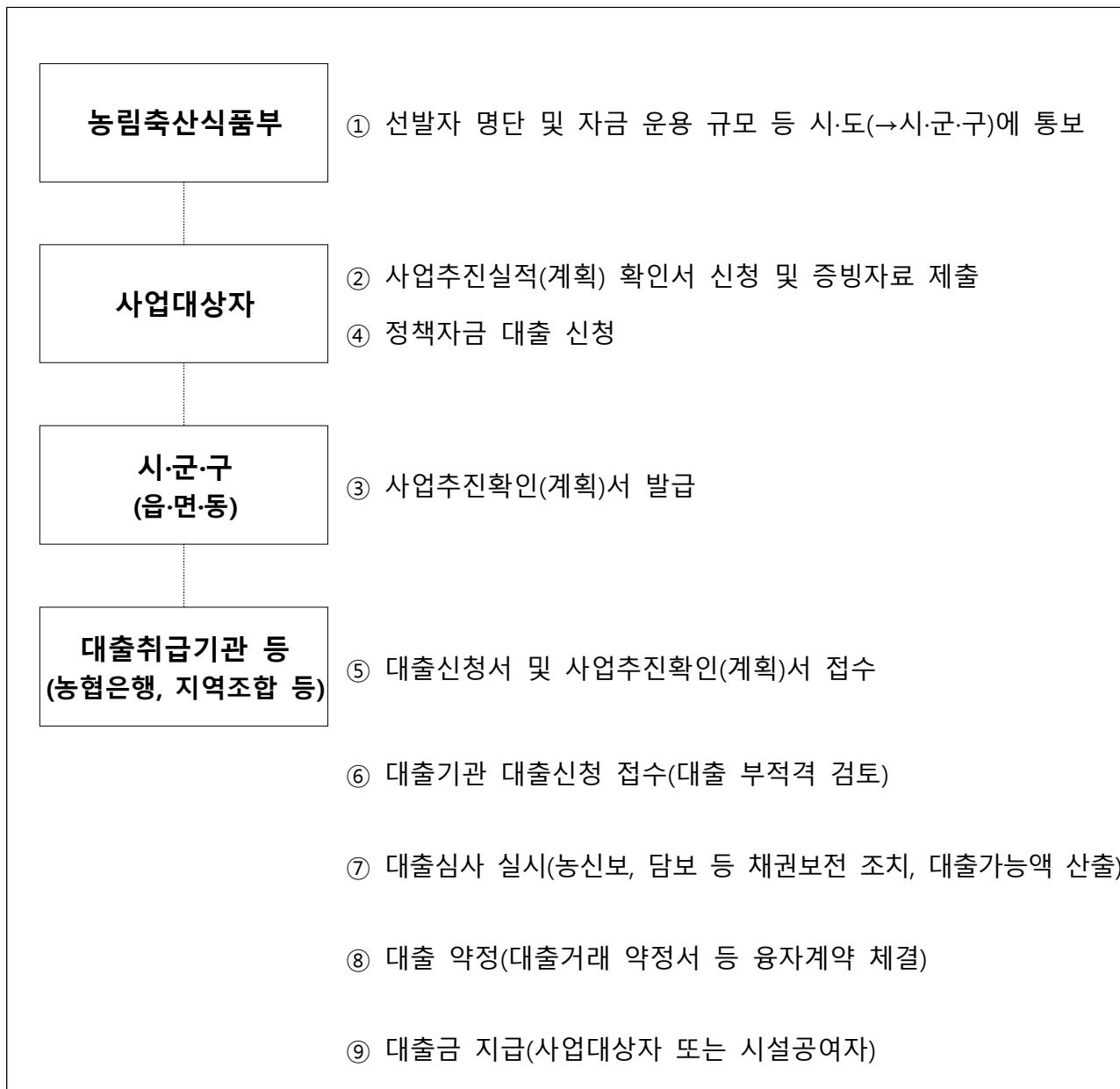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IV.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응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응자 실행 주요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선발된 사업 대상자 명단, 자금 규모 등을 시·도와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

사업대상자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 사업 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 사업 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 실행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축사신축 등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증빙 서류^{*}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가능

- ** 제출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제출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 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등

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 완료 후)」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
 -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통한 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지원
 - *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의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근거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시행

-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가능(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확인)
-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반드시 지급

※ 사업 완료 전 대출 시 유의사항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인 경우,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된다면 세부사업별 대출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 이에 해당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 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 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는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 자금 한도 운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은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 조합에서 수행 가능
 - * 경종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
 - 응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에서 수행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융자 대출실행 결과 등을 사업 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 제공
- *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 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 후계농 자금 지원에 따른 우대보증 한도가 초과한 경우, 일반보증 지원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사전 확인 필요
-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 제한 대상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운영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 거래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위 내용(상속)과 관련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다만,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균저당 설정,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

V.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실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서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 겸직·겸업 및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시·군·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 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하고,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작성 지도

○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 사업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회수 조치 통보
 - *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작목 및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된다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2)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 이내, 매년 1회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 ②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 ③ 기한 제한 없이 농외근로가 가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 활동 증빙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취소 조치 가능

< 영농활동 증빙 >

[기본]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제출(연 1회 이상)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증빙자료 제출·보완 요청 절차

-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2026.12.31.까지)에 사업 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최초의 자금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9)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로서 관련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10)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회수 사유

-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이와 같은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 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 다만, 대출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과 동일한 조건(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등)으로 추가지원 가능
 -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 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VI. 기타 행정사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 추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급
 -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발결과를 농림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 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용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사업장소 등의 이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 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승계

-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
-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안내
- ②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③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 (<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

〈부 록〉

- <별지 제1호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대출신청자료
-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신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 경영장부
- <별지 제5호서식>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및 선정결과 보고 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추진(계획 / 실적)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 관리카드
-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승계확인서
- [별표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영농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연도	년	분야	경종·축산	대출금액	천원	
신 청 내용	사업 명				세부 품목	* 토마토, 감자 등 세부품목 명시	
	사업 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국고계	보조	융자	지방비
사업 내용별 규모 (m ² , 두수 등)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개 인 정 보	5.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위 탁 · 제 3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제 공 동 의	다.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체크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	<input type="checkbox"/>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input type="checkbox"/>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5.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input type="checkbox"/>
6.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7. (해당) 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자료 -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input type="checkbox"/>
8. (해당) 교육 이수증(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 3년)	<input type="checkbox"/>
9.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 · 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 3년)	<input type="checkbox"/>
10.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사업신청일 현재)	<input type="checkbox"/>
11. (해당) 재해보험가입증명 (사업신청일 현재)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input type="checkbox"/>
13. (해당)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서 (최근 5년)	<input type="checkbox"/>
14. (해당) 표창/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input type="checkbox"/>
16. (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input type="checkbox"/>
13. (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 연간일정표, 판매 계획 등이 포함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14. (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15. (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input type="checkbox"/>
16. (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input type="checkbox"/>

※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영농계획서 및 영농일지·경영장부,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 : 2022년부터, 최근 5년 : 2020년부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I.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기재생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 이름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2. 농작물 생산

일련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임차)	농지면적(m ²)				재배면적 (m ²)	재배면적 (m ²)		실제수 면적 (m ²)	선택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미이용		노지	시설												
									상	관리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m ²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여부	가축종류	경영 형태 (자영·수탁)	축사 면적(m ²)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 ²)					

6. 가축 사육규모

구 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kL)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종돈업					산란계						천개			
	육용계											천수			
				오리	종오리업						kg				
					부화업						천개	천개			
					오리						천수	천수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면양		()	
	꿀벌(군)		()	
	토끼		()	
	사슴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m ²)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8. 소득 현황

(단위 : 천원)

	2022	2023	2024
총 소득액			

* [별첨] 경영규모(소득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규모·소득 자료 등

II. 사업계획

1. 사업명 :

2. 사업추진 방향

① 자금 조달계획

○

*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②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 원)				
				계	우수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③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④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m ²)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m ²)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3. 중장기 발전계획

①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부 내용					

②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4. 사업의 기대 효과

-
-
-
-

III. 경영(활동) 현황

1. 교육훈련

① 교육 이수 실적 및 컨설팅·코칭 실적(최근 3년 이내)

순번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컨설팅·코칭기간)	교육시간
1			~	
2			~	
...				

* [별첨] 교육이수증(수료증), 컨설팅 · 코칭 관련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양성평등 교육 이수 실적 및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여부(최근 3년 이내)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양성평등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별첨] 교육이수증(양성평등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시간표 포함), 부부공동 경영협약서 사본

2. 경영안정화 및 경영관리

① 농정참여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최근 5개년 내에 시·군의 공익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가입(회비납부)하여 활동하거나, 영농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가?(자조금 품목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농정시책관련 표창·상장(시장·군수급 이상) 실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별첨] 단체 가입 및 영농봉사 활동 내역, 단체 추천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재해보험 가입 증서, 공익단체활동, 표창·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농산물 판로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의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이 있는가?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 [별첨] 거래명세서 등 출하(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하실적확인서에 공동브랜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출하(거래)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③ 경영관리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연간 영농계획서(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를 작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3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별첨] 영농계획서 사본,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사본(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웹주소, 가입 ID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함
- ☞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영농기술 및 생산물 안전성

① 영농기술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생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인증 <input type="checkbox"/> 우수농산물 인증(GAP) <input type="checkbox"/> HACCP인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별첨] 인증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생산물 안전성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최근 5개년 내에 가축질병(구제역, AI, ASF)이 발생(확진)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최근 5개년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생산물 안전성을 허위기재한 경우,
 - 사업심사(검증)과정에서 확인된 때 :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확인된 때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별지 제2호 서식]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융자금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m ²)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회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쟁초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동산 보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4. 경영성과(기간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 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 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맹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 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1.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 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 규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현장확인(작성자: 직급 , 성명)

확인내용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최근5년 영농계획서 작성(비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최근 5년 영농일지 · 경영장부 작성(비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경영장부(회계) 전산프로그램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미활용

5.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시·도	시·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원분야	품목	신청액 (백만원)	후계농 선정년도	평가점수

* Excel로 작성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시·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원분야	품목	신청액 (백만원)	후계농 선정년도

* Excel로 작성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8호 서식]

○ 기재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우수후계농 교육수료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 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추진일정
			계	우수 후계농 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500평	100,000천원	100,000천원			
	총계		100,000천원	100,000천원			
사업 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 (C=B/A)
		축사신축	100,000천원			60,000천원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신청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대출 총계 (F=D+E)
		축사신축	-	축사신축	100,000천원	축사신축	
		-	-	-	-	-	
기재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 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지 제9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명 :

2. 주소 :

3. 생년월일 :

4.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성명 :

2. 주소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 주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카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

고유 번호			
사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 최종학력 : 학교 (졸업, 재학)	과	⑨ 결혼여부 : ⑩ 미혼 ⑪ 기혼
		⑩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⑬ 포상경력, 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⑯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영농 기반 (본인 소유· 승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 돈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저온냉장고, 스프링 쿨러 등) 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 종류별 규모(대) 						
경영 실적 (천원)	농업조수익 농외소득 경영비(생산비)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수준							
조사자 직. 성명							

* 매년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란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 구분 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영농승계 확인서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획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획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
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별표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 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표는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심사자는 심사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심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영농품목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특용작물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복합(축산+경종)	<input type="checkbox"/> 화훼	

■ 자격요건 · 취소사유 등 확인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등록	부적합/미등록
① 신청품목 적합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부품목:)	<input type="checkbox"/>
② 후계농자격 포기·취소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포기취소일 :)
③ 청년농자격 포기·취소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포기취소일 :)
④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사업장등록 및 직장보유 유무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직장명 :) * 직장 보유 적합의 경우 사업장/직장명 명시	<input type="checkbox"/>

■ 심사항목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교육훈련 (25)	기본 평가 (25)	1. 최근 3년('22.1.1~'24.12.31) 이내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00 (25) <input type="checkbox"/>	70 (20) <input type="checkbox"/>	50 (15) <input type="checkbox"/>	20 (10) <input type="checkbox"/>	20 (5)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 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농정참여 (23)	단체 활동 (5)	<가점> 1-1. 양성평등 관련 교육실적 또는 부부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가?	있음 (3)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양성평등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료 자료 및 협약서 사본을 확인해 점수 부여 ※ 협약서는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당사자 날인(필요시, 협약 공식화를 위해 입회인 날인 포함) * 입회인 : 지자체의 장, 농축협 조합장 등					
농정참여 (23)	단체 추천 (3)	2. 최근 5개년('20.1.1~'24.12.31) 내에 해당 시·군의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가입 (회비납부)해서 활동하거나 영농봉사활동 경험이 있는가?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단체) 단체장의 확인서, 회원증 또는 회비납부 증명서(영수증 등)로 가입여부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단순 친목단체(마을 청년회, 부녀회 등)은 불인정 ※ 현재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이내 가입 경력 인정 (봉사) 봉사활동 수혜자(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점수 부여					
	자조금 납부 (5)	<가점> 2-1.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추천을 받았는가?	있음 (3)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단체장 혹은 지역단체장의 날인 필요					
		<가점> 2-2.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 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자조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되, 작목반 등에서 운영하는 자체 자조금은 불인정(다만, 제주도에서 운용중인 제주형자조금 품목은 인정) ※ '23년부터 축산의무자조금 역시 증빙 필요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가점> 2-3.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재해 보험 (5)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품목별 작기에 따라 사업신청일 기준 재해보험 가입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가입실적 인정 ※ 작물 및 가축재해보험만 해당(단, 시설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 목적물에 작물 또는 가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가입 실적 인정					
수상 실적 (5)		<가점> 2-4. 농정시책 관련 표창 및 상장 있는가? (시장·군수급 이상)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수상내역 증서를 통해 확인하되, 농업과 무관한 수상실적 및 단순 감사패 등은 제외					
공동 브랜드 (10)		3-1. 최근 5개년('20.1.1~'24.12.31) 내에 생산자 조직(농협,법인)의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이 있는가?	5년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4년 이상 (7)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5)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3)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판로 확보 (10)		평가방법 : 전국 또는 지역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에 대한 출하내역서(브랜드명, 출하 품목, 출하액 등 기재)를 확인하되, 연간 120만원 이상 출하한 실적에 한해 인정 ※ 공동브랜드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공동브랜드 인정 기준> 1. 복수의 생산자조직이 연합하여 사용하는 브랜드 2. 단일 조직(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이나 출하 농가가 시,군 단위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 (예 : 포크빌, 포크밸리, 서울우유 등) 3. 시,군 또는 광역지자체가 브랜드 관리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의 생산자가 사용하는 브랜드					
		3-2.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없다면 최근 5개년('20.1.1~'24.12.31) 내에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이 있는가?	5년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4년 이상 (7)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5)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3)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전자 상거래 (10)		평가방법 : 직거래실적 유무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120만원 이상 출하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직거래 인정 유통경로> 1. 전자상거래 업체(G마켓 등)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2. 자체 운영 블로그 또는 전화주문 등을 통한 직거래 3. 로컬푸드마켓 또는 직거래장터를 통한 직거래 4. 하나로마트 등 식품 소매점에 직공급 5. 식품기업 등에 가공품 원료로 직공급					

	사업 목표 (20)	4. 중장기 발전계획 등 사업목표는 분명한가?	매우 우수 (20) <input type="checkbox"/>	우수 (15) <input type="checkbox"/>	보통 (10) <input type="checkbox"/>	미흡 (5)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상 합리성, 구체성 및 작성 항목간 연관되는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서 (15)	5. 연간 영농계획서(연간 일정표, 판매계획 등)를 작성하고 있는가?	5년 이상 (15) <input type="checkbox"/>	4년 이상 (12)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8)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최근 1개년 영농계획서 미제출 시 현장 방문 없이 전체 실적 불인정					
경영 관리 (85)	영농 기록 (35)	6.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5년 이상 (35) <input type="checkbox"/>	4년 이상 (30)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20)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최근 1개년 영농계획서 미제출 시 현장 방문 없이 전체 실적 불인정					
	전산 관리 (5)	<가점> 6-1.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경영장부 출력물 혹은 웹주소 및 가입ID로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cel을 활용하여 기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계정과목별 분류 집계, 영농실적 분석 등 다양한 수식 함수를 활용해 작성한 경우 인정 ※ 전체내역은 지자체 현장방문 시 확인					
	계획 달성 (10)	7. 연간 영농계획서와 영농기록(영농일지 혹은 경영장부)이 부합하는가?	매우 우수 (10) <input type="checkbox"/>	우수 (7) <input type="checkbox"/>	보통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매우 미흡 (0)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준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 또는 영농계획 달성을 영농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점수 부여					

			200 %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170 % 이상 (7) <input type="checkbox"/>	150 % 이상 (5) <input type="checkbox"/>	120 % 이상 (3) <input type="checkbox"/>	120% 미만 (0) <input type="checkbox"/>	
경영 규모 (10)		8. 품목별 농가평균 경영규모 대비 경영규모는? 평가방법 : 사업신청자의 주된 경작품목의 영농규모를 농식품부 통계연보 상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점수 부여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경영규모 인정 ※ 영농규모는 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육개체현황 등 공부를 통해 증명						
우수 경영 (20)			200 %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170 % 이상 (7) <input type="checkbox"/>	150 % 이상 (5) <input type="checkbox"/>	120 % 이상 (3) <input type="checkbox"/>	120% 미만 (0) <input type="checkbox"/>	
경영 소득 (10)		9. 품목별 단위면적(두수) 농가평균소득 대비 소득정도는? 평가방법 : 사업신청자의 주된 경작품목의 단위면적(두수)당 연간소득을 농진청 소득자료집 상 평균과 비교해 점수 부여 (소득은 판매수입금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생산품목이 다품목이거나, 품목별 소득파악이 불가한 경우 주된 품목의 통계 적용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소득금액 인정 ※ 소득금액은 거래내역서, 매입매출 관리대장 등을 통해 증명						
영농 기술 (15)	위생 안전 (10)	10. 생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평가방법 : 사업신청인이 보유한 친환경 인증/우수농산물 인증(GAP)/HACCP 인증이 있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되, 사업신청 마감일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인증서에 한하여 인증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인증 실적 인정	있음 (10)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가축 질병 (-15)	<감점> 10-1. 최근 5개년('20.1.1~'24.12.31) 내에 가축질병(구제역, AI, ASF)이 발생(확진)된 적이 있는가? 평가방법 :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있음 (-1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안정성 조사 (-15)	<감점> 10-2. 최근 5개년('20.1.1~'24.12.31) 내에 농관원 안전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평가방법 :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있음 (-1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p><가점> 10-3.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p>	상 (5) <input type="checkbox"/>	중 (3) <input type="checkbox"/>	하 (1) <input type="checkbox"/>	없음/ 미제출 (0)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5)		<p>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p> <p>※ 상(5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p> <p>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p> <p>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종합점수	점
------	---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인)